
2020학년도 단체교섭

주요 경과 및 단체교섭 협약안(최종) 요지문 보고

- I. 2020학년도 단체교섭 경과
- II. 2020학년도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
- III. 2020학년도 임금협약 최종 합의(안)
- IV. 2020학년도 노사협의회 경과
- V. 2020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I. 2020학년도 단체교섭 경과

1. 보고에 들어가며

2020학년도 단체교섭 경과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생존터를 둘러싼 무겁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현장을 지키시는 동지들의 고투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심신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섭을 시작하면서 본 노동조합은 최우선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보상 및 처우 향상, 그리고 근무조건 개선 및 복리 증진, 마지막으로 과거에 일부 후퇴되었던 제반 조건에 대한 복원과 경영상의 불합리성 제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 및 대학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요구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다소간 무리한 제안이라는 지적을 극복하여 성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약 즉, 핵심적으로 인금인상, 부양가족 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에 1차적으로 접근하였고, 다음으로 유연근무제의 확대 도입 및 육아휴직수당에 준하는 가족돌봄휴직 수당 지급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섭 시작 전부터 제기된 코로나 정국과 대학재정 악화라는 녹록치 않은 환경에 이어 초유의 입학자원 급감이라는 위급한 현실을 맞은 공동체의 운명 앞에서 더 이상의 교섭을 강행하기에는 직면한 어려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과 직원사회가 먼저 공동체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임을 실천적으로 증명하고자 대승적으로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 6차례의 실무소위원회와 2차례의 노조 교섭위원 전체회의, 수차례의 집행부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늘의 교섭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작은 성과지만 철저히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이 허용한다면 보다 전진하는 협상결과의 현실화를 위해 차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단체협약을 심화·확장시키도록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협약안은 대의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조합원 (임시)총회로 상정할 예정이며, 조합원 동지들의 판단 및 결정을 받아 2020학년도 단체교섭을 최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3.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2. 주요 경과 보고

① 2020. 9. 2. _ 2020학년도 임·단협 위원 통지(발송)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위원장	이 철 환	대표위원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 승 희	위 원	
기획부장	이 종 준	위 원	
대의원회 의장	강 선 구	위 원	대의원회
대의원	손 동 우	위 원	

- ② 2020. 10. 15. _ 2020학년도 단체협약 및 급여에 관한 협약안 통지 및 교섭 요청(발송)
- ③ 2020. 11. 2. _ 2020학년도 단체교섭 대표권 및 협약 체결권 위임 통보(접수)
- 위임자: 영광학원 이사장, 수임자: 대구대학교 총장
- ④ 2020. 11. 24.(화) 12:00 _ 노동조합 교섭위원 1차 전체회의: 위원 및 사무국장
- ⑤ 2020. 11. 30.(월) 15:00 _ 2020학년도 단체교섭 1차 전체회의
- 노사 교섭대표 상견례 및 주요 내용 소개, 2차 위임장 전달 및 확인, 교섭 일정 및 방법 협의
가. 대학본부 교섭위원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총 장	김 상 호	대표위원	
사무처장	이 대 식	위 원	단체교섭 대표권 재위임(단체협약)
기획처장	도 용 태	위 원	단체교섭 대표권 재위임(급여에 관한 협약)
교무처장	김 연 희	위 원	
학생처장	최 종 필	위 원	
총무부장	김 현 섭	위원 겸 간사	단체협약
기획예산부장	정 정 석	위원 겸 간사	급여에 관한 협약

나. 실무 소위원회

구분	직 위	성 명	구 분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 승 희	실무 교섭위원
	기획부장	이 종 준	실무 교섭위원
	대의원	손 동 우	실무 교섭위원
대학본부	기획예산부장	정 정 석	실무 교섭위원
	총무부장	김 현 섭	실무 교섭위원

- ⑥ 2020. 12. 9.(수) 14:00 _ 제1차 실무소위원회
- ⑦ 2020. 12. 16.(수) 15:00 _ 제2차 실무소위원회
- ⑧ 2020. 12. 23.(수) 15:00 _ 제3차 실무소위원회
- ⑨ 2021. 1. 4.(월) 15:00 _ 제4차 실무소위원회
- ⑩ 2021. 1. 11.(월) 16:00 _ 제5차 실무소위원회
- ⑪ 2021. 1. 18.(월) 15:00 _ 제6차 실무소위원회
- ⑫ 2021. 1. 18.(월) 16:00 _ 노동조합 단체교섭 위원 2차 전체회의
- ⑬ 2021. 2. 1. _ 2020학년도 단체교섭 2차 전체회의(서면)

II. 2020학년도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 요지

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노조(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실무소위원회 잠정합의(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제 3 장 인 사	제 3 장 인 사	제 3 장 인 사	제 3 장 인 사
제22조(승진여석 조정) ① 대학은 조합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② 대학은 직원의 직급승진 시 직급별 여석의 조정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22조(승진여석 조정) ① 대학은 조합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② 대학은 직원의 직급승진 시 직급별 여석의 조정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u>직전학기 대비 직급별 승진인원을 확대한다.</u>	제22조(승진여석 조정) ① 대학은 조합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② 대학은 직원의 직급승진 시 직급별 여석의 조정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며, <u>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u>	제22조(승진여석 조정) ① 대학은 조합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② 대학은 직원의 직급승진 시 직급별 여석의 조정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며, <u>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u> → 현행 유지
제 5 장 복 무 (연장·근로시간·휴일·휴가)	제 5 장 복 무 (연장·근로시간·휴일·휴가)	제 5 장 복 무 (연장·근로시간·휴일·휴가)	제 5 장 복 무 (연장·근로시간·휴일·휴가)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한다. ③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④ 동 · 하계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부서장의 승인하에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u> 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한다. ③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④ 동 · 하계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 및 <u>유연근무제의 시행방법은</u> 노사협의회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한다. ③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④ 동 · 하계방학 기간 중의 근무시간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2조(근무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부서장의 승인하에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u> 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한다. ③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④ <u>유연근무제의 시행 형태,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u>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노조(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실무소위원회 잠정합의(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제34조(탄력근무) 대학은 동·하계방학 기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육아휴직수당) 대학은 조합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월8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특별휴가) 대학은 조합원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직원 휴일 및 휴가와 연가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휴가를 별도로	에서 정한다. 제34조(단축근무) 대학은 동·하계방학 기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제38조(특별휴직수당) 대학은 조합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월8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특별휴가) ①대학은 조합원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직원 휴일 및 휴가와 연가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휴가를 별도로	제34조(탄력근무) 대학은 동·하계방학 기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육아휴직수당) 대학은 조합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월8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특별휴가) 대학은 조합원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직원 휴일 및 휴가와 연가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휴가를 별도로	다. → 유연근무제 시행 가능(노사협) 제34조(단축근무) ① 대학은 동·하계방학 기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② 방학 중 직원 단축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단축근무기간 중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내 1명은 반드시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한다. ④ 방학기간 중 단축근무 시행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 단축근무 시행 제38조(육아휴직수당) 대학은 조합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월8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현행 유지 제41조(특별휴가) 대학은 조합원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대학교 직원 휴일 및 휴가와 연가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휴가를 별도로

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노조(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실무소위원회 잠정합의(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부여한다.	로 부여한다. ② 대학은 조합원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부여한다.	부여한다. → 현행 유지(시행 중)
제 6 장 급 여	제 6 장 급 여	제 6 장 급 여	제 6 장 급 여
제42조(급여의 협약) 조합원의 급여는 2019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42조(급여의 협약) 조합원의 급여는 2020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42조(급여의 협약) 조합원의 급여는 2020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42조(급여의 협약) 조합원의 급여는 2020학년도 급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 현행 유지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 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 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 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삭제)	제51조(퇴직보전금) 대학은 조합원에 게 복리후생차원에서 퇴직보전금 300,000원을 매월 지원한다. → 현행 유지
제53조(맞춤형복지제도) ① 대학은 조합원에게 자기계발(어학강습, 문화생활, 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그 세부 시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교직원 단체복지	제53조(맞춤형복지제도) ④ 대학은 조합원에게 자기계발(어학강습, 문화생활, 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그 세부 시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교직원 단체복지	제52조(맞춤형복지제도) ① 대학은 조합원에게 자기계발(어학강습, 문화생활, 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그 세부 시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교직원 단체복지	제53조(맞춤형복지제도) ① 대학은 조합원에게 자기계발(어학강습, 문화생활, 취미활동 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그 세부 시행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교직원 단체복지

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노조(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실무소위원회 잠정합의(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보험료 및 종합건강검진비 등 의무적 경비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험료 및 종합건강검진비 등 의무적 경비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삭제)	보험료 및 종합건강검진비 등 의무적 경비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험료 및 종합건강검진비 등 의무적 경비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현행 유지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삭제)	제57조(체육문화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 현행 유지
제58조(안전보건위원회) 대학은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8조(안전보건위원회) 대학은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6조(안전보건위원회) 대학은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안전보건위원회) 대학은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갈음
제63조(보장성보험)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 안전, 재해 등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다.	제63조(보장성보험)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 안전, 재해 등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내용은 노사협의회에 서 정한다.	제61조(보장성보험)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 안전, 재해 등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다.	제63조(보장성보험)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 안전, 재해 등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다. → 현행 유지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80조(협의안건)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복지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제80조(협의안건)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복지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제78조(협의안건)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복지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제80조(협의안건)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복지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

2019학년도 단체협약서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노조(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대학(안) (총79개조 + 부칙 4개 조항)	2020학년도 단체협약서 실무소위원회 잠정합의(안) (총81개조 + 부칙 4개 조항)
사항 3.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일반직원에게 관련된 대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건의 사항 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사항 3.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일반직원에게 관련된 대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건의 사항 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사항 3.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일반직원에게 관련된 대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건의 사항 7.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항 3.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6. 일반직원에게 관련된 대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건의 사항 7.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조항 추가: 조합원 안전 및 보건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단,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의 제60조(출산지원)는 2019학년도 단체협약 체결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제1조(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제1조(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제1조(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자구 수정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Ⅲ. 2020학년도 임금협약 최종 합의(안)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노동조합(안)	2020학년도 대학(안)	2020학년도 잠정합의(안)																																																																
급여 인상률	- 전년 대비 급여 동결 (단, 급여의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 2019학년도 성과상여금 외 추가 성과상여금 (근속급+직무급의 4.5%) 지급	-2.8% 인상; 2020 공무원 급여인상률 (단,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2020학년도 성과상여금	- 전년 대비 급여 동결 (단, 급여의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2020학년도 성과상여금	- 전년 대비 급여 동결 (단, 급여의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 - 2020학년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table><tr><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지급액</th></tr><tr><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20,000원</td></tr><tr><td>둘째자녀</td><td>4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60,000원</td></tr></table>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table><tr><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지급액</th></tr><tr><td colspan="2">배우자</td><td>40,000</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20,000</td></tr><tr><td>둘째자녀</td><td>6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100,000 원</td></tr></table>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20,000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원	<table><tr><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지급액</th></tr><tr><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20,000원</td></tr><tr><td>둘째자녀</td><td>4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60,000원</td></tr></table> 전년도 동일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table><tr><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지급액</th></tr><tr><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20,000원</td></tr><tr><td>둘째자녀</td><td>4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60,000원</td></tr></table> 전년도 동일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자녀	20,000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원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부양가족		월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																																																																		

Ⅳ. 2020학년도 노사협의회 경과

① 2020. 7. 9.(목) 14:00 _ 2020학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

가. 여름방학 기간 중 단축근무 실시 합의(시행)

나. 특별휴가 및 집중휴무 실시 합의(시행)

② 2020. 9. 2.(수) _ 2020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통지(변경)

직 위	성 명	구 분
위원장	이 철 환	대표위원
부위원장	이 승 희	위 원
사무국장	정 광 국	위 원
대의원회 의장	강 선 구	위 원
대의원	김 세 영	위 원
조합원	여 선	위 원
조합원	박 동 원	위 원

③ 2020. 10. 7.(수) 10:00 _ 2020학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

가. 직원 대학원 진학 지원 제도 시행 관련: 시행 합의

나.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상시 시행 관련: 지속 협의

다. 관리운영직의 사무직 특별채용 추진: 지속 협의

④ 2020. 12. 10.(목) _ 2020학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요청(통지)

⑤ 2020. 12. 21.(월) 14:00 _ 2020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가. 동계방학 기간 중 단축근무 실시 합의(시행)

나. 관리운영직 직종전환: 지속 협의

다.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협의회로 같음(합의)

라. 보장성보험 가입내역 협의: 지속 협의

V. 2020학년도 임·단협 및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 2020학년도 임·단협 위원

노동조합 측	대학 측
이철환(위원장), 이승희(부위원장), 이종준(기획부장), 강선구(대의원의장), 손동우(대의원)	김상호(총장), 김연희(교무처장)[변경: 최진명], 최종필(학생처장), 도용태(기획처장), 이대식(사무처장), 김현섭(총무부장), 정정석(기획예산부장)

※ 임·단협 실무교섭위원

노동조합 측	대학 측
이승희(부위원장), 이종준(기획부장), 손동우(대의원)	김현섭(총무부장), 정정석(기획예산부장)

■ 2020학년도 노사협의회 위원

노동조합 측	대학 측
이철환(위원장), 이승희(부위원장), 정광국(사무국장), 강선구(대의원의장), 김세영(대의원), 여선(조합원), 박동원(조합원)	김상호(총장), 김연희(교무처장)[변경: 최진명], 최종필(학생처장), 도용태(기획처장), 이대식(사무처장), 김현섭(총무부장), 정정석(기획예산부장)